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h1>보도자료</h1>			
	보도	2019. 10. 11.(금) 조간	배포	2019. 10. 10.(목)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유진혁 부국장(3145-8129), 주원정 선임조사역(3145-8121)		

제 목 : 「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」 발간

- 신고센터 설립이후 19년간의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간추려 소개 -

I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신고센터」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·상담사례 등을 정리하여 ‘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’을 발간
 - 「불법사금융신고센터」는 출범(’01.4월) 이후 19년간 검찰·경찰 및 관계기관(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)과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
 - 그러나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 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문의도 매년 10만건*을 초과

* (’15년) 13.5만건 → (’16년) 11.8만건 → (’17년) 10.0만건 → (’18년) 12.5만건

- 이에 그간 「불법사금융신고센터」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및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

II

책자의 주요내용

- 「불법사금융신고센터」로 매년 1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소개
 - (제1장) 「불법사금융 신고센터」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 : '01.4월 신고센터 설립이후 연혁 및 업무절차, 상담시스템 등 개요
 - (제2장)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: 법정이자율 초과, 불법 채권추심, 보이스포싱,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 개념 정리
 - (제3장) 불법사금융 상담요령 및 사례 : 「불법사금융 신고센터」에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

III

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「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」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,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신고센터」는 향후 법규·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동 사례집에 반영하고
 -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알림·소식/보도자료)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사례 1

보이스피싱

□ K씨(50대, 자영업자)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 사기범에게 속아 7백만원을 입금하였지만 다행히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언제쯤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

-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**관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**가 무엇보다 **중요**하며 **피해금 환급절차**에 따라 **피해금**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
- 해당 은행에 확인 결과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**해당은행은 관련계좌를 지급정지** 하였고 동 계좌 잔액에 대해 **2개월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중**
- 해당 계좌에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도 섞여있기 때문에 **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피해자별 환급금이 계산**되며, **채권소멸절차 개시후 3개월 이내 환급될 예정**이라는 것을 안내
- 동 **진행상황**을 우리원 **홈페이지**에서 **확인**할 수 있음도 안내

사례 2

불법 채권추심

□ E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대부업자 丙에게 일수대출 100만원을 신청하여 5만원을 공제한 95만원을 현금으로 받음

- 현재까지 원리금 23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丙은 원리금 180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야산에 묻어버리겠다"고 협박해 상담을 요청

- 먼저, 미등록 대부업자 丙의 원리금 상환요구는 **법정 이자율한도 초과** (연체이자를 제외해도 연 815%) 및 **불법 채권추심 행위**임을 설명
- 따라서, **채권추심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**하여 즉시 **관할경찰서에 신고**하고 **신체적인 위협**을 가한 경우에는 **112로 신고**할 것을 안내
- 더불어 「**불법사금융.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**」에 파견중인 경찰관을 통해 **관할경찰서**에서 **수사가 조속히 진행**될 수 있도록 **협조**를 요청

- C씨(40대, 회사원)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불법중개업체로부터 연 15%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고 전산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으니 일정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는 전화를 받고, 동 업체의 중개를 통해 62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228만원을 예치금조로 송금
- 업체의 말과 달리 본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 아니며 중개업체의 예치금 요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구제를 요청

- 대부업체 및 제보자의 신고내용 등을 통해 중개업체의 불법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
- 대출중개업체의 고객으로부터의 대출중개수수료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임을 설명(대부업법 제19조)
- 금융감독원은 편취한 수수료 228만원을 C씨에게 반환토록 조치하고,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

참고사항

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당부사항

-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“누구나 손쉽게 고수익을 얻는다”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
- 고수익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‘파인’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

유사수신업체의 주요특징

- (금융업가상통화 등 정상적 사업을 가장) 합법적인 금융업이나 가상통화 사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사업이라고 광고
- (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‘고수익’과 ‘원금보장’ 약속) 수백배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 또는 일단위 지급액을 제시하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면 재투자 회유 및 협박
- (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집책을 동원)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설명회 참석자 또는 기존투자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지인 회유를 유도